

# 사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규칙개정안

의안 번호	2008-제 호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일자 : 2008. 2.

발 의 자:

## 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일치, 법제처 법령 제명 띄어쓰기 권고안 및 국어맞춤법에 등에 의한 자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가. 법제처 법령 제명 띄어쓰기 권고사항 반영

나.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치(안 제1조)

다. 국어맞춤법 등에 의한 자구 등의 정비(안 제3조, 안 제4조, 안 제6조, 안 제10조, 안 제11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 : 붙임

나. 기 타

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사천시 조례 제 호

## 사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규칙개정안

사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사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” 을 “사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” 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” 를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60조” 로 한다.

제3조 중 “상당한” 을 “적당한” 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각호의 1” 을 “각호의 어느 하나” 로, 제4호 중 “2개이상” 을 “2개 이상” 으로, “2개기관” 을 “2개 기관” 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의결을 얻어” 를 “의결을 받아” 로, 제4항 중 “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” 을 “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회 중” 으로, “ 10일이내” 를 “10일 이내” 로 한다.

제10조 중 “각호의 1” 을 “각호의 어느 하나” 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휴회중” 을 “휴회 중” 으로, “7일이내” 를 “7일 이내” 로 한다.

제16조 중 “지방자치법” 을 “「지방자치법」” 으로, “사천시의회회의규칙” 을 “「사천시의회 회의 규칙」” 으로 한다.

제17조 중 “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” 를 “「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」” 로, “사천시의회회의규칙” 을 “「사천시의회 회의 규칙」” 으로 한다.

### 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명 사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</b></p>	<p><b>제명 사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</b></p>
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규칙은 <u>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</u>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</p>	<p><b>제1조(목적)</b> ----- 「<u>지방자치법 시행령</u>」 제60조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<b>제3조(청원서 보완요구)</b> 의회의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<u>상당한</u>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</p>	<p><b>제3조(청원서 보완요구)</b> ----- ----- ----- --- <u>적당한</u> ----- -----.</p>
<p><b>제4조(불수리사항의 통지)</b>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.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동일기관에 <u>2개이상</u> 또는 <u>2개기관</u> 이상에 제출된 것</p> <p>4. (생략)</p>	<p><b>제4조(불수리사항의 통지)</b> ----- ---- <u>각호의 어느 하나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<u>2개 이상</u> ---- <u>2개 기관</u> ---- -----.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6조(청원서 회부와 심사)</b> 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·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에 회부하거나,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<u>의결을 얻어</u> 청원심사특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·회부한다.</p>	<p><b>제6조(청원서 회부와 심사)</b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의결을 받아</u> ----- -----.</p>

<p>② ~ ③ (생략)</p> <p>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<u>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이내</u>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.</p>	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<u>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회 중</u>----- ----- <u>10일 이내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<b>제10조(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)</b>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<u>각호의 1</u>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	<p><b>제10조(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)</b> ----- <u>각호의 어느 하나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11조(심사보고) ①</b>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폐회 또는 <u>휴회</u>중의 기간을 제외한 <u>7일이내</u>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<b>제11조(심사보고) ①</b> ----- ----- ----- ----- <u>휴회 중</u>----- ----- <u>7일 이내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16조(징계)</b> 청원을 심사·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<u>지방자치법</u> 및 <u>사천시의의회회의규칙</u>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</p>	<p><b>제16조(징계)</b> ----- ----- ----- <u>「지방자치법」</u> -- <u>「사천시의의회 회의 규칙」</u>----- -----.</p>
<p><b>제17조(준용규정)</b> 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<u>사천시의의회위원회조례</u>와 <u>사천시의의회회의규칙</u>을 준용한다.</p>	<p><b>제17조(준용규정)</b> ----- ----- <u>「사천시의의회 위원회 조례」</u> --- <u>「사천시의의회 회의 규칙」</u>-----.</p>

## 관 계 법 령 발 취

<지방자치법 시행령>

제60조(운영 규정)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.